

# 목차

목차	2
자동차등록	3
수수료	3
관련법규	3
등록기간	3
구비서류	3
매매(양도, 양수)관련 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, (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)	3
기타 이전서류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	4
과대료	5



자동차등록

↑ = 분야별정보 > = 교통/자동차 > = 차량등록·관리 > = 자동차등록 > = 이전등록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' 이전등록 ' 변경등록 ' 신규등록 ' 말소등록 ' 저당권설정/말소등록 ' 임시운행허가

' 등록증(번호판)재발급 ' 등록원부발급 '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

## 수수료

증지대-1,000원(타시도 1,500원), 인지대-3,000원, 취.등록세, 공채

#### 관련법규

자동차관리법 제12조, 자동차등록령 제26조~30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~36조

#### 등록기간

구분	등록기간	
매매, 경락, 공매	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	
상속	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	
증여 중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		

※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
## 구비서류

➡ 매매(양도, 양수)관련 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, (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)

거래관계	구비서류		
	·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)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(본인 내방시		
(http://www.yeosu.go.kr)			

7		①양도 는 인감증명서 불필요. 신분증 지참) 인 ·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(도장날인, 본인 방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) (전소 · 자동차등록증 유자) · 압류 및 자동차세 미납시 이전등록 불가 ※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 · 양수인이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.	
서		②양수 인 (신소 유자)	<ul> <li>이전등록신청서</li> <li>의무보험 가입증명서(피보험자 : 양수인)</li> <li>번호판(2개) - 번호변경시</li> <li>신분증</li> <li>위임시 : 위임 받은자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의 도장날인) 신분증 사본 / 위임장에 위임자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)</li> <li>법인 : 위임 받은자 신분증, 법인인감증명서, 위임장(법인 인감 도장날인)</li> </ul>
추가서류	개 인	③양도 인 (매도 자)	• 추가서류 없음
		<ul><li>④양수</li><li>인</li><li>(매수</li><li>인)</li></ul>	· 지방세감면대상자 :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고엽제휴유증환자,5.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증명서
	법인	⑤양도 인 (매도 자)	· 법인등기부 등본(말소사항 포함) · 사업자등록증 · 법인인감증명서(자동차매도용)
		인	법인등기부 등본1부   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   법인인감증명서1부     위임장(법인인감도장 날인), 위임받은자 신분증
	참 고 사 항	에서 ) 	

# 기타 이전서류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

	구분	구비서류
	<ul> <li>사망자 -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1부</li> <li>· 상속포기서 (상속자를 제외한 전원의 날인 및 서명),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 ! 사실확인서 각 1부중 택1 )</li> <li>· 상속인 신분증</li> <li>› ※유의사항</li> <li>· 상속순위: 1) 배우자 및 직계비속 (최근친이 우선함) 2)직계존속 3)형제 · 자매, 4) 4촌이내 병 · 받을 상속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(후순위 상속의 경우) 법원 판결로 상속하여야 함</li> <li>·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(3개월 이내)</li> </ul>	
	법원경매	• 법원판결문 원본 (법원) • 경락대금완납증명서 (법원)
추	확정판결	· 판결문 원본(법원)

가 서 류	법인합병	• 법인등기부등본(합병사항 기재된 등본) - 신법인 • 법인합병계약서 •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- 구법인 • 법인 인감증명서 - 합병된 법인
	공매	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(공매기관)     등기(등록)청구서     매각결정통지서     압류해제조서     공매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(등록) 촉탁서
	관용차량 매각	· 불용처분매각결정서(매각기관) · 매각대금납부영수증(매각기관)
	원고 강제 이전	・ 법원판결문 원본 (법원) ・ 송달/확정증명원(법원)

## 과태료

구분	기간경과시과태료		
매매,증여,상속,기타	기간경과 후 10일내	10만원	
	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	1만원 (최고50만원)	

 ${\bf COPYRIGHT} \circledcirc {\bf YEOSU\text{-}CITY.} \ {\bf ALL} \ {\bf RIGHTS} \ {\bf RESERVED}.$ 

# Yeosu Web Contents

